

2020년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심사 공고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중독심리학회는 본 학회가 정한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규정 및 중독심리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자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자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전형에서 합격한 자에게 중독심리전문가 또는 중독심리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학회의 자격심사기준에 부합하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중독심리 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심사에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5.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

- 목 차 -

- I. 자격심사 청구자격
- II. 자격심사 청구 일정
- III. 자격시험 전형료 및 납입
- IV. 자격시험 구비서류
- V.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사항 안내
- VI. 문의처
- VII. 기타 안내사항

I. 자격심사 청구자격

※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이 2020년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신규 규정으로 2020년 한국중독심리학회 중독심리사/중독심리전문가 자격검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자격규정 부칙 제 2조(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경우, 신/구 시행세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 2조(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학회 및 본 학회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자는 2021년도 자격검정 일정까지 신/구 자격규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자격 필수사항(한국중독심리학회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1)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원자격 유지자**(2020년도 회비 완납자)

- 연회비는 해당 항목의 임상경력 기간에 맞게 납부가 되어야 함

※ 예) "A 수련생"이 자격규정 제5조 중독심리 전문가 제3항에 해당하고 5년의 임상경력을 갖고 있다면, 5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 완료한 상태이어야 함

2)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자격규정-제3장 제5조(중독심리 전문가) 또는 제6조(중독심리 심리사)'의 **세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한 자**

※ 위의 조건 사항에 미충족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립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규정>

제3장 자격규정

제5조 (중독심리 전문가)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 심리학과에서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의 교수로서 중독심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5.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과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중독치료(혹은 상담) 또는 중독재활 분야에서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규정
제6조 (중독심리 심리사)

다음 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및 소정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한국심리학회가 인준하는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학과에서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¹⁾을 이수하고 중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²⁾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구 분		자격검정 응시 여부	
		필기시험	면접시험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규정세칙 제3장 제5조 1항~5항 中 1개 해당자	×	○
중독심리사	자격규정세칙 제3장 제6조 1항 및 3항 해당자	○	○
	자격규정세칙 제3장 제6조 2항 해당자	×	○

- 1) **필수과목(4과목 12학점 이상):** 중독심리(혹은 중독관련 과목), 정신병리(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심리학)
선택과목(3과목 9학점 이상): 심리학개론, 가족심리학, 집단상담,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신경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정신약물학, 발달심리학, 재활심리학, 노인심리학, 청소년심리학, 학교심리학, 건강심리학, 범죄심리학, 심리통계
- 2) **한국심리학회 산하 14개 분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중, 본 학회의 2급 자격증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예: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건강심리사 2급, 범죄심리사 1급 등).** 단, 범죄심리사 1급은 2항에 2급으로 해석하며, 그 외 학회도 자격증 급수 구분에 따라 1급 자격이 본 학회의 2급 자격으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준하는 자격증이 아닐 경우에는 불인정함(예: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은 인정 불가).

2. 청구자격 필수사항(한국중독심리학회 2020 1월 1일 이후 가입자)

1)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원자격 유지자**(2020년도 회비 완납자)

- 연회비는 해당 항목의 임상경력 기간에 맞게 납부가 되어야 함

※ 예) "A 수련생"이 자격규정 제6조 중독심리 전문가 제1항 (3)에 해당하고 5년의 임상경력을 갖고 있다면, 5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 완료한 상태이어야 함

2)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자격규정-제2장 제5조(중독심리사) 또는 제6조(중독심리전문가)'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 학회의 중독심리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명시된 **수련과정 요건을 모두 이수한 자**

3) **자격규정 제5조 2항과 제6조 2항에 명시된 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붙임1] 확인**

※ 위의 조건 사항에 미충족할 경우,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립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신규 자격규정>

제2장 자격규정

제5조 (중독심리사) 중독심리사는 다음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독심리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필수(3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본 학회 중독심리사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3)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 받은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본 학회의 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3. 본 학회의 중독심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자격시험(필기 및 면접)에 합격한 자.

제2장 자격규정

제6조 (중독심리전문가) 중독심리전문가는 다음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독심리 관련 대학원 과정에서 중독심리 필수(4과목) 및 선택(3과목) 과목을 이수하고, 중독심리학 관련 분야의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대학의 교수로서 본 학회 수련과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임상 경력 또는 학문적 업적이 있는 자
- (3) 본 학회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모학회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4) 중독심리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중독심리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 받은 자로서, 중독심리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2. 본 학회의 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3. 본 학회의 중독심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자격시험(면접)에 합격한 자.

Ⅱ. 자격심사 청구 일정

1. 자격검정 공고일 : 2020년 8월 25일(화)
2. 심사서류 및 전형료 접수 마감일 : 2020년 9월 21일(월) 16:00 마감
 ※ 서류의 경우, 도착일이 아닌 우체국에 접수하여 도장을 찍은 날짜(소인날짜)를 기준으로 함
3. 심사서류 결과 발표일 : 2020년 10월 5일(월) 개별 통지
4. 필기 및 면접시험 : 2020년 10월 17일(토) / 장소 및 시간: 미정(대상자에게 개별공지)
 - 1) 오전 : 중독심리사 필기시험 / 중독심리전문가 면접시험
 - 2) 오후 : 중독심리사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5. 최종 합격자 공지 : 2020년 10월 23일(금)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COVID-19의 상황으로 인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Ⅲ. 자격시험 전형료 및 납입

1. 자격심사 비용(자격증 발급비용 2만원 포함)

구 분		필기시험	면접심사비	총 계
중독심리사	필기, 면접 응시	75,000원	175,000원	총 250,000원
	면접 응시	-	175,000원	총 175,000원
중독심리전문가		-	175,000원	총 175,000원

1) 납입계좌 : <국민은행> 451601-04-257821 한국중독심리학회

※ 입금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본인 성함과 생년월일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홍길동690922).

※ 마감 기한(9/21[월] 16:00) 이후 입금 불가

2) 환불기준

구 분	대 상	환불금액	비고	
서류심사 불합격자	중독심리전문가	150,000원	서류심사비 25,000원 제외	
	중독심리사	필기, 면접	225,000원	서류심사비 25,000원 제외
		면접	150,000원	서류심사비 25,000원 제외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독심리사	175,000원	필기시험비 75,000원 제외	
면접시험 불합격자	중독심리전문가	20,000원	환불금은 자격증 발급비임	
	중독심리사			

※ 환불은 자격검정 일정이 종료된 후 2주일 내 입금 처리될 예정입니다

IV. 자격시험 구비서류([붙임 2, 3] 한국중독심리학회 수련수첩 참조)

1. 서류 관련 안내사항

- 1) 한국중독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중독심리 자격증 수련수첩을 다운로드하여 첨부된 목록표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제출 서류상의 모든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내용 작성은 컴퓨터 또는 수기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단, 서명 및 도장은 원본 날인만 인정됩니다.
- 4) 수련수첩 제출 시에는 슈퍼바이저의 확인(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슈퍼바이저는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중독심리학회 해당년도 회원자격 유지자여야 함

2. 자격심사 서류 접수처

- (375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현동홀 302a호 김서희
-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심사 서류' 임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V.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사항 안내

-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칙에 근거하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시험 시행 세칙>

제5조 (필기시험영역 및 문항)

필기시험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영역별 20문항 내외로 **전체 시험문항은 100문항**으로 한다.

- ① 중독의 이해(중독의 병인론, 중독의 시작, 진행, 유지, 예방 및 조기개입, 피해감소 등)
- ② 중독심리평가(선별 및 평가, 진단 및 공존장애 평가 등)
- ③ 중독심리 치료 및 상담 이론(중독상담이론 및 치료적 접근법 등)
- ④ 중독심리 치료 및 상담 실제(치료계획, 치료실행, 회복 및 재발 관리 등)
- ⑤ 중독심리 윤리

제6조 (면접시험의 구성) 면접시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역) 면접시험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독심리사

- ① 의사소통 및 정서적 안정성, 태도
- ② 중독심리 관련 지식
- ③ 중독심리 관련 실무 경험
- ④ 중독심리사의 윤리

(2) 중독심리전문가

- ① 의사소통 및 정서적 안정성, 태도
- ② 중독심리 관련 전문성
- ③ 중독심리 관련 실무 경험 및 자문능력
- ④ 중독심리 연구수행 능력
- ⑤ 중독심리전문가의 윤리

2. (심사위원의 구성)

면접시험 심사위원의 구성은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면접시험의 진행)

면접시험의 진행은 면대면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7조(자격시험 합격기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 전체 응시과목의 평균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2. 면접시험 : 전체 평가영역의 평균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단, 한 개 이상의 평가영역에서 40% 미만의 점수를 받을 시, 불합격.

제8조(자격시험 최종판정) 중독심리자격 취득의 최종 승인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자격시험 시행세칙의 예외규정) 중독심리자격 취득에 관한 예외 또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적용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승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VI. 문의처

1. 이메일 문의

- addictpsy01@hanmail.net (한국심리학회 또는 한국중독심리학회 가입 관련 문의)
- addictpsy02@hanmail.net (서류접수 확인, 자격검정료 입금 확인 등)

2. 전화 문의: 010-5594-1134 (문자수신불가)

※ 자격검정 관련 문의는 오후 1시~5시까지만 운영

3. 문의 사항은 가급적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폭주로 인하여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VII. 기타 안내사항

-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www.addictpsy.or.kr)에 게시되어 있는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결과 및 최종 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 세부일정은 학회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서류심사 불합격자의 서류는 반환요청 시 착불 요금으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